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19 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:김태선・김남근・정준호

맹성규 • 권칠승 • 윤종군

유준병 • 장철민 • 이훈기

이학영 · 강유정 · 이용우

박홍배 · 김태년 · 박 정

안호영 · 김주영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, 직업정보제공사업을하는 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그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구직자가알 수 있도록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한편, 현행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 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 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, 최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등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이에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9조제6항제1호, 제25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6항제1호 중 "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"를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인 경우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 주
- 나. 최근 3년 이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업주

제25조제1호 중 "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 주
- 나. 최근 3년 이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 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업주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유료직업소개사업) ① ~	제19조(유료직업소개사업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	6
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	
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	
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
1.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	1 <u>타</u>
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	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	<u>하는 사업주인 경우</u>
<u>사업주인 경우</u> 구직자에게 그	
사실을 고지할 것	
<u><신 설></u>	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
	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
	인 체불사업주
<u><신 설></u>	나. 최근 3년 이내에 「산업
	<u>안전보건법」 제10조제1항에</u>
	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
	등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
	<u>업주</u>
2.・3. (생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	제25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
수 사항) 제18조에 따라 무료	수 사항)
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	

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 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 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2. · 3. (생략)

1 <u>다</u>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업주인 경우
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
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
인 체불사업주
나. 최근 3년 이내에 「산업
안전보건법」 제10조제1항에
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
등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
업주

2. · 3. (현행과 같음)